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2. 8. 29.
4. 회부일자 : 2022. 9. 2.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 7. 13.)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근거법령 및 명칭 변경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으로 근거법령을 변경함(안 제1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로 변경함(안 제17조)
 -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3. 교육감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등의 절차 및 방법과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10조)
 - 4.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5.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교육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6.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보고·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7.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8.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IV. 참고사항

- 1. 관계법규 : [별첨 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3. 협 의 : 해당기관 없음

4. 기 타

- 입법예고(2022. 6. 16.~7. 14.)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5]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1호로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절차와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¹⁾의 제정으로 독립 법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지방보조금 제도는 그동안 지방재정법(2021.1.12. 법률 제17892호 개정전)에서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어 제32조의2에서부터 제32조의11까지 총 10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조금 운용상에서 부정수급사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²⁾하였고, 20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

1)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입체적 감시를 통해 근절-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2018.2.1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발표 내용 중 일부]

○ 주민 자율감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항목을 전면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등을 규정하는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³⁾)을 안내하면서 종전 조례의 개정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465, 2022.3.8.)

○ 동 개정조례안은 제정된 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바,

상위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른 조례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개정조례안은 총 3장, 27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규정, 제2장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16조), 제3장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제17조~제27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구성체계는 교육부의 표준안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바,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표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예시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음.

2)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먼저 동 개정조례안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 등’ 에 관한 사항은 ① 법 규정 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 3조, 안 제7조, 안 8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⁴⁾(이하 ‘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 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③ 현행 조례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안 제10조), 마지막으로 ④ 「지방재정법」의 규정사항(안 제15조)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세부사항은 [표-1]과 같습니다.

[표-1] 조례안 관련 법령 근거 규정

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규정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동 조례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관리기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관리기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법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제10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동 조례 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11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2조(성과평가)	법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제1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관리기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1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법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관리기준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 이처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또는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시행 2021.9.6.), [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

○ 다만 안 제10조⁵⁾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와 관련하여 제2호에서는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법 제15조⁶⁾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는 사후 신고 사항이 아닌 사전 승인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것으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등 안전 제출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 제3장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17조) 및 위원의 임기(안 제18조), 직무(안 제19조), 운영(안 제20조~안 제26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자치단체 내 유일한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대부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예산 편성 및 조례안 관리, 재원분담 등에 한정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 제10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6)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지방보조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 및 운용 관리,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기능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에 따라 객관적·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외부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바,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예방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의 명칭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표-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비교

구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근거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지방보조금법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①지방보조금 예산안 ②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집행부) ③지방보조금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④지방보조금의 재원분담 사항 ⑤지방보조사업 유지여부	①지방보조금 예산안 ②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집행부) ③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④ 신고포상금 지급 ⑤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 ⑥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이처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⁷⁾되어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 역시 이와 같은

7) 「지방보조금법」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바, 안 제3장의 세부 규정은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18조 각 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명시하는 조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재기재는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제처 의견 14-0278).⁸⁾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8)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2018.6), 9쪽.

법제처 안건번호 의견 14-0278, 2014.12.18.

“~(생략)~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 다만 해당 규정들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인지시키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보조금의 편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부칙에 관한 사항

-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총 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1조는 시행일을, 안 제2조는 적용례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부칙 규정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시행일과 본칙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잠정적·일시적 조치 사항을 보충적,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⁹⁾에 따른 것으로 입법의 체계적합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부칙 안 제4조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체계의 통일을 도모하고, 관련 조례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6. 29. 회신 의견12-0179 참조)~(생략)~”

9)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6.

[붙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절차도

	단계별 업무	업무 내용
예산 편성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지방보조금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 신청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
	 보조금 예산 심의·확정 (지방자치법 제1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의회 등의 예산심의를 통해 보조금 예산 확정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지방보조금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보조금 관리부서에 제출
	 보조금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법 제8~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의 타당성, 자기부담금 능력 등을 검토 후 교부 결정 • 사정의 변경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집행 및 사후 관리	 보조금 집행 (지방보조금법 제12~16, 21~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상황 보고(보조사업자→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교부 결정 내용 위반시 수행 명령(지자체→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외 사용금지, 내용 변경·인계시 승인(자치단체), 별도 계정 설정, 재산 처분 제한, 중요재산의 무기등기
	 보조금 정산·검사 (지방보조금법 제17~20조,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이상) 실적보고서 검증, (10억원이상) 회계감사 • 관리부서는 실적보고서 토대로 집행 적정성 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적합시 금액 확정, 미흡시 시정명령
	 사후관리 (지방보조금법 제30~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 평가 실시 : 3년 일몰제 적용(원칙) • 부정적 집행 발견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보조금 반환, 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강제징수 등 제재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

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